

울산지방법원 2020. 5. 12 선고 2019가단12068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

변론 종결 2020. 4. 14.

판결 선고 2020. 5. 12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,7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I이 1958년 4월 일자불상경 울산시 울주군 J 과수원 1279㎡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K은 위 I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어서 이 법원 등기와 1981. 8. 31. 접수 제72627호로 울산시 울주군 J 과수원 1195㎡(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)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3094호, 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라 한다)에 의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어서 피고들이 이 법원 등기와 2013. 2. 20. 접수 제15262호로 2012. 9. 7.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/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피고 B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와 2018. 7. 19. 접수 제102724호로 2018. 7. 18.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, 2피고 H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와 2018. 7. 24. 접수 제105238호로 2018. 7. 19.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, 3피고 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와 2018. 7. 24. 접수 제105239호로 2018. 7. 20.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원고는 2018. 10. 8. L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40,000,000원을 수령하고 장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(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).

[인정하는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 1, 2호증,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- 1) 원고가 1969. 1. 27. 이 사건 토지 중 약 100평을 M(K 이전의 소유자 I의 양자)로부터 매수하여, 그 지상에 원고의 모친의 묘를 쓴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.
- 2) K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의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버렸다.
- 3)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로 취득하면서 피고들에게 협의 또는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, 그 보상금액이 평당 74만 원인 것을 평당 40만 원이라 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속아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에 해당하는 7,400만 원을 받았어야 할 것을 4,000만 원만을 받고 말았다.
- 4) 이 사건 각서는 피고 C가 한 거짓말에 속아서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이다.
- 5) 피고들이 원고에게 3,400만 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고들에게 각470만 원씩을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제소하기로 약속한 이 사건 각서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다. 판단

- 1)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살펴 보건대,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제소의 특약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
- 2) 이러한 부제소의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- 3) 원고는 이 사건 각서가 피고 C의 거짓말에 속아서 작성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를 피고 C의 거짓말에 속아서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

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속아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무효라고 할 수 없기도 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은 더 살피지 아니한 채 인정하지 아니한다(장차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인정할 수 없어서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, 물론 위와 같은 이유로는 민법 제7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기도 하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명한